

『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
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
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
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현행 조례는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으로 발달장애인,
치매환자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

층, 미성년자 등으로 정하고, 이들 중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심판청구 비용 및 후견활동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의사결정능력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, 이들의 정신건강을 유지·증진하려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며, 특히 성년후견심판에 대한 비용 등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어 그 취약점이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.
- 이에 서울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후견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의사결정을 조력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강화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권익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.
- 이를 통해, 정신질환자의 건강과 복지서비스 및 지역재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안 제5조제3호를 신설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성년후견제

도를 이용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